



제록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 질의 : 판매기관

안녕하세요.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판매허가기관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할 때 사용자 이름으로 수입(외자)하는 경우와 판매자 이름으로 수입(내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자력법에 보면 직접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있어 수입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모두 업무대행기관에 운반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원자력법에는 단지 판매라고만 되어있어 이 두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이름으로 수입(외자)하는 경우만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응답 : 김경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2실)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직접 취급하지 아니하고 허가사용자나 신고사용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있다”에서 “직접 취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외국에서 제조 또는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변형하거나 부가작업을 하여 자기명의의 새로운 고유모델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지정된 구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은 동일품목에 대한 이종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외자도입이라는 것과는 다르며 원자력법에서는 수입되는 품목이 지정된 사용자에게 반드시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으로 세관에서 통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긴 판매기관의 경우는 질의하신 사항의 내외자 외는 상관없고 수입된 기기를 변형없이 그대로 최종 사용자가 정해진 상태에서만 수입, 통관, 판매를 하셔야 하며 운반은 자체운반, 업무대행 운반 위탁 둘다 가능하십니다.

제록 : 신고대상 업체로서의 의무사항

◎ 질의 : 강희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을 신고하였거나 신고 예정인 업체입니다. RG(방사선발생장치) : 160kVp, 1.0mA X 4대. RI(방사성동위원소) : 10mCi(370MBq), Ni-63. 상기 기기들은 모두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업체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볼까 합니다. 항목별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나열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지적해 주실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안전관리자의 선임 문제 : 신고대상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면허소지자가 필요없다.
2. 신고대상 장치의 정기검사 및 시설검사 : 사용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 사용중인 RG / RI는 정기검사, 시설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중인 장치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경미한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3. 사용개시후 기록 및 비치 : 기록/비치 사항은 없음.
4. 신고사용기관의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의무사항 : 신고사용기관의 종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되어 피폭관리, 건강진단, 교육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다.

◎ 응답 : 한상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 1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정확한 내용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기관은 현행 원자력법 상에서 검사, 교육, 인력, 측정장비의 보유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사용 및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지하고 계시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필증 상의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사선안전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관리가 결코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 해도 방사선은 발생되는 것이며 오히려 이에 대해 잘 훈련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불의의 사건들은 발생하기 쉽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마당

담배와 금연운동의 역사

서기 700년 멕시코 마야문명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오랜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약 500년 전쯤 부터라고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 같은 연기를 마심으로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옛날 우리나라의 담뱃대와 같은 긴 파이프에 담뱃잎을 넣어 연기를 돌려가면서 마셨다고 한다.

1492년 컬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디언들의 이런 관습이 유럽지역에 잘못 전달되어 현재의 잘못된 습관적인 흡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담배가 서구에 소개된 것은 당시 유럽에서 외국의 신기한 것을 따라하는 귀족들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잘못된 습관적 흡연형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디언들의 정신적 단합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가 잘못 전해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나쁜 습관이 된 것이다.

유럽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1592~1598) 때라고 한다. 초기에는 담배가 기관지염을 일으켜 객담(가래) 배출이 증가되는 것을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담배가 건강에 나쁜 것을 몰랐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병든 사람이 대통을 가지고 연기를 마시면 능히 담과 한을 제거하고 또 술을 깨게 한다.”고 하였고 담배의 근원에 대해서 남만국에 담배고라는 여인이 풀을 복용하고 담질환을 고쳤으므로 남만초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경험으로 알고 있던 담배의 해독이 과학적으로 선언된

것은 1962년 영국의 Hammond와 Hom의 보고와 1964년과 1979년 미국 보건국장(Surgeon General)의 ‘흡연과 건강’이란 보고서이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었으며 담배의 해독 성분과 빌암물질, 흡연의 해독이 많이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 중반에는 담배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금연운동가들의 구호도 실현 가능성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1905년 대한매일신보의 ‘금연동맹 선언문’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고, 1980년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결핵협회가 주축이 되어 금연운동이 전개되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1995년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발효되었다.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 증진법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출입지역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큰 건축물이나 공연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금연과 질주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있다.

금연 운동가들은 미래의 역사책에는 담배가 ‘사람들이 500여년간 잘못 사용하여 각종 암, 심장 질환, 폐 질환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게한 마약의 일종’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